

예 산 총 칙

제1조 : 2025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		세입·세출 예산총액	일시차입 한 도 액
계		878,234,561	26,347,037
1.	일 반 회 계	863,675,705	25,910,271
2.	특 별 회 계	14,558,856	436,766
	의 료 급 여 기 금	1,300,730	39,022
	주 차 장	9,803,714	294,111
	주 거 환 경 개 선 사 업	64,864	1,946
	발 전 소 주 변 지 역 지 원 사 업	307,719	9,232
	지 하 수 관 리	107,087	3,213
	화 력 발 전 지 역 개 발	2,974,742	89,242

제2조 :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3조 :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음.

제4조 : 계속비사업은 없음.

제5조 :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23,000,000천원이다.

제6조 :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1,734,909천원으로 한다.

제7조 :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
재무활동 경비,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 경비,
재해대책 및 복구비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